

수원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8467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8467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672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박윤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변론 종결 2020. 4. 3

판결 선고 2020. 4. 24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9. 25. 선고 2018가단672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지상권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시흥시 G외 1필지 소재 창고는 1994. 9. 14. , I외 1필지 소재 주택은 1978. 9. 7. 각 사용승인을 받아 그 부지인 원고 소유 토지 중 77㎡ (이하 ' 침범 토지' 라한다) 를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가 침범토지를 인식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와 종전 토지 소유자인 J주식회사 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상되는 지상권에 관한 점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1996. 12.23. 선고 96다 798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가 침범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도 없어 점유취득시효기간 경과후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지상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침범 토지 면적이 적어 원고 영업장의 주차장 운영에 영향이 없는 반면, 위침범 부분에는 피고의 임차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창고의 경우 점유 부분의 철거는 곧 창고 전체의 철거를 초래하므로,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 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침범 토지 면적은 원고 소유 토지를 기준으로 약 4%에 해당하여 적지 아니한 면적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경위나 피고 건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제 1심법원의 조정절차에서 피고와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창고 및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 갱신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윤희 찬판사 김선숙판사 서동민